

무배당 KDB 확실한 미래 변액연금보험

KDB생명보험주식회사

(사업방법서 별지)

사 업 방 법 서

1. 보험종목의 명칭

무배당 KDB 확실한 미래 변액연금보험

2. 보험기간, 보험료 납입기간, 최소거치기간, 가입나이, 연금개시나이 및 보험료 납입주기 등

가. 보험기간

연금지급형태	연금개시 전 보험기간	연금개시 후 보험기간
실적배당 종신연금형	계약일부터 연금개시나이 계약해당일의 전일까지	연금개시나이 계약해당일부터 종신까지

나. 보험료 납입기간, 최소거치기간, 가입나이, 연금개시나이, 보험료 납입주기

구 분	내 용
보험료 납입기간	5년납, 7년납, 10년납, 12년납, 15년납, 20년납, 25년납, 30년납
최소거치기간	5년
가입나이	만 15세 ~ 70세
연금개시나이	55세 ~ 80세 다만, 「보험료 납입기간+최소거치기간+가입나이」가 연금개시나이 범위 이내이어야 함
보험료 납입주기	월 납

3. 의무가입에 관한 사항: 해당사항 없음

4. 배당에 관한 사항: 해당사항 없음

5. 보험료에 관한 사항

가. 기본보험료

계약자가 보험료 납입기간 중 매월 계속 납입하기로 한 월납보험료를 말한다.

나. 추가보험료

기본보험료 이외에 계약일 이후 1개월이 지난 후부터 보험료 납입기간까지 추가로 납입하는 보험료를 말한다. 다만, '14. 보험료 납입일시중지제도에 관한 사항'의 납입일시중지에 따라 납입기간이 연장된 경우 추가보험료 납입이 가능한 납입기간은 연장되기 전 납입기간으로 한다.

다. 보험료 납입한도

(1) 기본보험료 (1구좌 기준)

5만원 이상 100만원 이하로 한다.

(2) 추가보험료

(가) 납입 가능한 추가보험료 총 한도

= 해당 월까지 납입할 기본보험료(선납포함)의 200%

(나) 매월 납입 가능한 추가보험료 한도

= 기본보험료 x 200% x 해당 경과월수(선납포함) - 이미 납입한 추가보험료의 합계

다만, 경과월수는 가입할 때를 1개월로 하며, 보험료 납입기간을 최고한도로 한다.

계약자적립금의 중도인출이 있을 경우 중도인출금액의 누계만큼 추가로 보험료 납입이 가능하다.

(다) 추가보험료는 해당 월까지의 기본보험료를 납입한 경우에 한하여 추가납입이 가능하다.

6. 보험료 할인에 관한 사항: 해당사항 없음

7. 보험료 선납에 관한 사항

가. 선납보험료는 보험료 납입기간 이내에 당월분을 제외한 6개월분 이하의 기본보험료를 선납할 때에 한하며, 선납보험료는 기본보험료의 배수로 납입하여야 한다.

나. '가'의 선납보험료(특약보험료 제외)는 '29. 기타'의 가. 납입보험료의 처리에 관한 사항에 따라 평균공시이율로 적립하여 「해당 월계약해당일」에 「당월 특별계정 투입보험료 해당액(기본보험료에서 계약체결비용 및 계약관리비용을 제외한 금액을 말하며, 평균공시이율로 계산한 이자 포함)」을 일반계정에서 특별계정으로 이체한다.

다. 선납보험료의 이자에 해당하는 부분은 해지공제를 하지 않는다.

라. 특약보험료의 경우 '가'에 따른 기본보험료와 동일한 배수에 해당하는 금액을 해당 특약의 적용이율로 할인(3개월분 이상의 보험료를 선납할 때 한함)하여 '가'의 선납보험료와 함께 영수한다.

8. 해지계약의 부활(효력회복)에 관한 사항

- 가. 계약이 해지되었으나 해지환급금을 받지 않은 경우(보험계약대출 등에 따라 해지환급금이 차감되었으나 받지 않은 경우 또는 해지환급금이 없는 경우를 포함한다) 계약자는 해지된 날부터 3년 이내에 회사가 정한 절차에 따라 계약의 부활(효력회복)을 청약할 수 있다.
- 나. 회사가 '가'의 부활(효력회복)을 승낙한 때에 계약자는 부활(효력회복)을 청약한 날까지의 연체된 보험료에 '9. 연체이율에 관한 사항'에서 정한 이율로 계산한 금액을 더하여 납입하여야 한다.
- 다. 해지계약의 계약자적립금은 계약이 해지된 날을 기준으로 특별계정에서 일반계정으로 이체하며, 부활(효력회복)시에는 해지된 날부터 부활(효력회복)로 인하여 이체사유가 발생한 날까지 평균공시이율로 적립한 계약자적립금과 연체보험료 중 특별계정 투입보험료 해당액(위험보험료, 최저사망적립금 보증비용, 실적배당 종신연금 보증비용 및 부가보험료 제외, 연체된 특별계정 투입보험료를 평균공시이율로 계산한 이자포함) 등을 이체사유가 발생한 날의 기준가격을 적용하여 해지시점의 펀드 편입비율에 따라 일반계정에서 특별계정으로 재투입하여 계약자적립금으로 한다.
- 라. '다'의 이체사유가 발생한 날이라 함은 부활(효력회복) 승낙 후 연체보험료가 완납된 경우에는 「연체보험료 완납일+제2영업일」, 연체보험료 완납 후 부활(효력회복) 승낙이 이루어진 경우에는 「부활(효력회복) 승낙일+제2영업일」로 한다.

9. 연체이율에 관한 사항

연체보험료에 대한 연체이율은 연체기간에 대하여 「평균공시이율+1%」 범위 내에서 회사가 정하는 이율로 한다.

10. 중도인출에 관한 사항

- 가. 계약자는 계약일부터 1개월이 지난 이후부터 보험기간 중 보험년도 기준 연12회에 한하여 계약자적립금의 일부를 중도인출 할 수 있으며, 「중도인출 신청일+제2영업일」의 기준가격을 적용하여 지급한다.
- 나. 1회에 중도인출할 수 있는 최고 금액은 중도인출할 당시 기본보험료 해지환급금(다만, 보험계약대출의 원금과 이자를 차감한 금액으로 특약의 해지환급금은 제외된 금액)의 50%와 추가보험료 계약자적립금과의 합산 금액으로 한다. 다만, 계약후 경과기간 10년 이내의 총 중도인출금액은 계약자가 실제 납입한 보험료 총액(다만, 특약보험료는 제외)을 초과 할 수 없으며, 중도인출금액은 10만원 이상 만원단위로 중도인출 할 수 있다.
- 다. '가' 및 '나'에 따라 계약자적립금의 일부를 중도인출하기 위해서는 중도인출 후 기본보험료 해지

환급금(다만, 보험계약대출의 원금과 이자를 차감한 금액으로 특약의 해지환급금은 제외된 금액)이 1구좌당 300만원보다 작지 않아야 한다. 다만, 추가보험료 계약자적립금은 전부 중도인출이 가능하다.

라. '가'에서 '다'에 따라 중도인출이 이루어졌을 경우 중도인출금액은 추가보험료 계약자적립금에서 우선 차감하며, 추가보험료 계약자적립금이 부족한 경우에는 기본보험료 계약자적립금에서 차감 처리 한다

마. 중도인출 이후 계약자적립금 또는 해지환급금을 지급할 때에는 「인출금액 및 중도인출금액에 적용되는 이자」를 차감하여 지급하므로 계약자적립금 또는 해지환급금이 최초 가입할 때 안내한 금액보다 적어질 수 있다.

11. 공시이율에 관한 사항

가. 신공시이율(연금Ⅳ)는 매월 1일 회사가 정한 이율로 하며, 당월 마지막 날까지 1개월간 확정 적용한다.

나. 회사는 운용자산이익률과 객관적인 외부지표금리를 가중평균하여 산출한 일반계정 신공시기준이율에 조정률을 가감하여 신공시이율(연금Ⅳ)를 결정한다(다만, 일반계정 신공시기준이율 산출을 위한 운용자산이익률 계산시에는 시가평가되는 변액보험 보증준비금의 변동성을 헷지하기 위해 일반계정에서 운영하는 파생상품의 손익은 제외한다).

$$\text{일반계정 신공시기준이율} = \text{객관적인 외부지표금리} \times \alpha + \text{운용자산이익률} \times (1 - \alpha)$$

(1) 외부지표금리와 운용자산이익률의 가중치

(가) 가중치는 다음의 산식에 따라 산출한다.

$$\text{외부지표금리의 가중치}(\alpha) = \frac{A/B + C}{A + C}$$

$$\text{운용자산이익률의 가중치}(1-\alpha) = 1 - \frac{A/B + C}{A + C}$$

- A : 직전년도초 보험료적립금
- B : 자산의 직전년도말 듀레이션
- C : 직전년도 수입보험료

(나) 직전년도는 사업년도 개시 3개월 이전 12개월을 말한다.

(다) 가중치는 0.5%포인트 단위로 반올림하여 결정한다.

(라) 가중치는 사업년도에 동일하게 적용하여야 하며, 60%를 초과 할 수 없다.

(마) 「직전년도초 보험료적립금」과 「자산의 직전년도말 듀레이션」, 「수입보험료」는 계정별로 구분하여 산출한다.

(바) 「수입보험료」는 원수보험료를 말한다.

(2) 객관적인 외부지표금리

(가) 객관적인 외부지표금리는 다음의 산식에 따라 산출한다.

객관적인 외부지표금리

= 국고채(5년) 수익률×국고채 가중치(β1)

+ 회사채(무보증 3년, AA-) 수익률×회사채 가중치(β2)

+ 통화안정증권(1년) 수익률×통화안정증권 가중치(β3)

+ 양도성예금증서(91일) 유통수익률×양도성예금증서 가중치(β4)

(나) 외부지표 공시기관 등이 상기 외부지표금리가 더 이상 발생되지 않는 사유 등으로 다른 지표금리로 대체하여 공시하는 경우에는 그 대체된 지표금리를 사용할 수 있다.

(다) 국고채(5년), 회사채(무보증 3년, AA-) 및 통화안정증권(1년) 수익률과 양도성예금증서(91일) 유통수익률은 공시기준일을 적용시점의 전전월말 직전3개월 가중이동평균을 통해 산출한다.

(라) 국고채 가중치(β1), 회사채 가중치(β2), 통화안정증권 가중치(β3), 양도성예금증서 가중치(β4)는 다음의 산식에 따라 산출하여 사업년도에 동일하게 적용한다.

$$\text{국고채 가중치}(\beta_1) = \frac{a}{a+b+c+d}$$

$$\text{회사채 가중치}(\beta_2) = \frac{b}{a+b+c+d}$$

$$\text{통화안정증권 가중치}(\beta_3) = \frac{c}{a+b+c+d}$$

$$\text{양도성예금증서 가중치}(\beta_4) = \frac{d}{a+b+c+d}$$

- a는 회사가 보유한 국내 발행 국공채의 직전년도 평균 잔고(월평잔의 평균)

- b는 회사가 보유한 회사채의 직전년도 평균 잔고(월평잔의 평균)

- c는 회사가 보유한 통화안정증권의 직전년도 평균 잔고(월평잔의 평균)

- d는 회사가 보유한 양도성예금증서의 직전년도 평균 잔고(월평잔의 평균)

- 직전년도는 사업년도 개시 3개월 이전 12개월을 말한다.

- 가중치는 0.5%포인트 단위로 반올림하여 0%이상 100%이하로 결정한다.

(3) 운용자산이익률

(가) 운용자산이익률은 다음의 산식에 따라 산출한다.

$$\text{운용자산이익률} = \text{운용자산수익률} - \text{투자지출률}$$

(나) 운용자산수익률은 산출시점 직전 1년간의 자사의 투자영업수익을 기준으로 산출하며,

투자지출률에 사용되는 투자비용은 동 기간동안 투자활동에 직접적으로 소요된 비용을 반영하여 합리적인 방법에 의하여 산출한다.

$$\begin{aligned} \text{※ 운용자산수익률(\%)} &= \frac{(2 \times \text{직전 12개월간 투자영업수익}) \times 100}{\{\text{직전 13개월말 현재운용자산} + \text{전월말 현재운용자산} \\ &\quad - (\text{직전 12개월간 투자영업수익} - \text{직전 12개월간 투자영업비용})\}} \\ \text{※ 투자지출률(\%)} &= \frac{(2 \times \text{직전 12개월간 투자영업비용}) \times 100}{\{\text{직전 13개월말 현재운용자산} + \text{전월말 현재운용자산} \\ &\quad - (\text{직전 12개월간 투자영업수익} - \text{직전 12개월간 투자영업비용})\}} \end{aligned}$$

(다) 운용자산은 당기손익에 반영되지 않은 운용자산관련 미실현손익을 제외한 금액을 기초로 계산한다.

다. 신공시이율(연금Ⅳ)는 동종상품[신공시이율(연금Ⅳ)가 운용되는 상품]의 배당 신공시이율(연금Ⅳ)보다 높게 적용한다.

라. 회사는 계약자에게 연1회 이상 신공시이율(연금Ⅳ)의 변경내용을 통지하며, 인터넷 홈페이지(상품공시실)에 신공시이율(연금Ⅳ)와 신공시이율(연금Ⅳ)의 산출방법에 대하여 공시한다.

마. 신공시이율(연금Ⅳ)의 최저보증이율은 계약 후 5년이하는 연복리 1.25%, 5년초과 10년이하는 연복리 1.0%, 10년초과는 0.75%로 한다.

바. 신공시이율(연금Ⅳ)의 세부적인 운용방법은 회사에서 별도로 정한 「신공시이율운용지침」을 따른다.

12. 보험계약대출에 관한 사항

가. 계약자는 (연금개시나이 - 1)세 계약해당일까지 이 계약의 해지환급금(다만, 보험계약대출의 원금과 이자를 차감한 금액)의 범위 내에서 회사가 정한 방법에 따라 보험계약대출을 받을 수 있다.

나. 계약자는 '가'에 따른 보험계약대출금과 보험계약대출이자를 「연금개시나이 계약해당일-제2영업일」 전일까지 언제든지 상환할 수 있으며, 상환하지 않은 때에는 회사는 보험금(고도후유장해보험금 및 실적배당 종신연금), 해지환급금 등의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에 지급금에서 보험계약대출의 원금과 이자를 차감할 수 있다.

다. 회사는 계약이 해지되는 때에는 즉시 해지환급금에서 보험계약대출의 원금과 이자를 차감한다.

라. '가'에 따라 보험계약대출이 이루어졌을 경우 보험계약대출금액은 「대출신청일+제2영업일」을 기준으로 계약자적립금의 펀드별 편입비율에 따라 특별계정에서 일반계정으로 이체한 후 신공시이율(연금Ⅳ)를 적용하여 보험계약대출적립금으로 적립한다. 다만, 계약자에 의한 보험계약대출의

원금과 이자의 일부 또는 전부에 대하여 상환이 있는 경우 상환금액(다만, 보험계약대출이율에서 신공시이율(연금Ⅳ)을 차감한 이율에 해당하는 이자부분은 제외)은 보험계약대출적립금에서 제외하고, 상환일부터 제2영업일동안 평균공시이율로 적립한 후 「상환일+제2영업일」을 기준으로 일반계정에서 특별계정으로 이체한다.

마. 회사는 보험수익자에게 보험계약대출 사실을 통지할 수 있다.

바. 이 계약의 보험계약대출이율은 신공시이율(연금Ⅳ)에 회사가 정하는 이율을 가산하여 계산하고, 보험계약대출이율이 변경될 때에는 월가중 평균한 이율로 한다.

13. 월공제액에 관한 사항

연금개시 전 보험기간 중 해당 월의 위험보험료, 계약관리비용 중 유지관련비용(보험료 납입기간 후), 최저사망적립금 보증비용 및 실적배당 종신연금 보증비용의 합계액을 말하고, 연금개시 후 보험기간 중 해당 월의 계약관리비용(연금부분), 최저사망적립금 보증비용 및 실적배당 종신연금 보증비용의 합계액을 말하며, 월계약해당일에 계약자적립금에서 공제한다.

다만, 계약체결비용, 계약관리비용 중 유지관련비용(보험료 납입기간 중) 및 계약관리비용(기타비용)은 보험료를 납입할 때에 공제하며, 연금개시 후 보험기간 중 최저사망적립금이“0”이 되면, 이후 최저사망적립금 보증비용은 차감하지 않는다.

14. 보험료 납입일시중지제도에 관한 사항

가. 계약자는 계약일부터 보험료 납입기간의 1/2이 지난 이후(다만, 보험료 납입기간이 10년 이상인 경우 5년이 지난 이후)부터 보험가입시 최초 설정한 보험료 납입기간 내에 회사가 정한 방법에 따라 보험료 납입의 일시중지(이하 “납입일시중지”라 한다)를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보험료의 납입이 중지된 기간(이하 “납입일시중지기간”이라 한다)동안 보험료를 납입하지 않을 수 있다. 다만, ‘보험료의 납입을 면제하는 특약’ 이외의 특약이 부가된 계약은 납입일시중지를 신청할 수 없다.

나. ‘가’의 경우 납입일시중지 이후의 해당 보험료 납입기일은 납입일시중지기간만큼 연기되고, 그에 따라 보험료 납입기간은 납입일시중지기간만큼 연장된다(“이하 연장된 보험료 납입기간”이라 한다). 납입일시중지기간 중 납입하지 않은 기본보험료 및 향후 보험료는 연기된 보험료 납입기일 및 연장된 보험료 납입기간에 따라 납입하여야 한다.

다. ‘나’에 따라 납입일시중지로 인하여 보험료 납입완료 시점에서 연금개시나이까지의 기간이 ‘2. 보험기간, 보험료 납입기간, 최소거치기간, 가입나이, 연금개시나이 및 보험료 납입주기 등’에서 정한 ‘최소거치기간’미만인 경우 보험료 납입완료시점에서 최소거치기간이 경과한 직후 도래하는 연계약해당일로 연금개시나이가 연기된다. 그러나 특약의 보험기간은 연장되지 않으며, 특약의 보험기간이 종료되었다 하더라도 납입일시중지기간 중 납입하지 않은 특약보험료는 주계약 보험료와 함께 납입하여야 한다. 이 경우 납입되는 특약보험료는 주계약 계약자적립금에 투입(계약관리비용 중 기타

비용 제외)되어 적립된다.

다만, 연기된 연금지급개시시점이 이 계약의 '2. 보험기간, 보험료 납입기간, 최소거치기간, 가입나이, 연금개시나이 및 보험료 납입주기 등'에서 정한 '연금개시나이'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납입일시중지를 신청할 수 없다.

라. '나' 및 '다'에도 불구하고 계약자가 계약일부터 12년 이상이 지난 후 납입일시중지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납입기간 연장 및 연금지급개시시점 연장을 적용하지 않는다.

마. 납입일시중지 신청가능횟수는 총 5회를 한도로 하며, 납입일시중지기간은 누적하여 36개월(보험료가 연체된 경우 연체 개월 수 포함)을 초과할 수 없다. 또한 납입일시중지의 신청은 월단위로 가능하다.

바. 납입일시중지기간은 월계약해당일에 해지환급금(보험계약대출의 원금과 이자를 차감한 금액으로 특약의 해지환급금을 제외한 금액)에서 '사'에서 정한 월공제액의 공제가 가능한 기간 이내로 한다. 다만, 납입일시중지기간 중 '사'에서 정한 월공제액의 공제가 불가할 경우 그 때부터 납입일시중지기간은 종료되며, 계약자는 보험료 납입기일까지 해당 보험료를 납입하여야 한다.

사. 납입일시중지기간동안의 월공제액

'13. 월공제액에 관한 사항'에도 불구하고, 납입일시중지기간 및 연장된 납입기간 동안 적용하는 월공제액은 산출방법서에서 정한 바에 따라 다음과 같은 금액으로 하여 월계약해당일에 해지환급금(보험계약대출의 원금과 이자를 차감한 금액으로 특약의 해지환급금을 제외한 금액)에서 공제한다.

(1) 납입일시중지기간 중 월공제액

위험보험료와 계약체결비용, 최저사망적립금 보증비용, 실적배당 종신연금 보증비용 및 특약이 부가된 경우 특약보험료(계약관리비용 중 기타비용 제외)의 합계액

(2) 연장된 납입기간 동안 적용하는 월공제액

위험보험료와 계약관리비용 중 유지관련비용(보험료 납입기간 후), 최저사망적립금 보증비용, 실적배당 종신연금 보증비용의 합계액

다만, 연장된 납입기간에 해당하는 기본보험료에서는 계약체결비용 및 계약관리비용 중 유지관련비용(보험료 납입기간 중)을 공제하지 않으며, 계약관리비용 중 기타비용만 공제한다.

아. 계약자는 납입일시중지기간 동안 기본보험료 및 추가보험료를 납입할 수 없으며, 보험료의 자동대출 납입을 신청할 수 없다. 납입일시중지기간이 종료되기 전에 보험료를 납입하고자 하는 경우 계약자는 회사에 납입일시중지 취소를 신청하고 보험료 납입기일까지 기본보험료를 납입하여야 한다. 이 경우 '나' 및 '다'에 따라 연장된 납입기간 및 연금지급개시시점은 납입일시중지신청 전으로 환원하지 않는다.

자. '보험료의 납입을 면제하는 특약'에 의해 납입면제가 된 경우, 납입면제 사유 발생전 납입일시중지를 한 계약은 납입면제 사유 발생전 기 납입일시중지된 약정보험료를 납입하여야 한다.

차. 회사는 납입일시중지기간 종료일 15일 이전에 계약자에게 납입일시중지기간의 종료(납입일시중지

신청으로 인한 월공제액이 해지환급금에서 더 이상 공제되지 못한다는 사실 등) 및 보험료 납입에 관한 사항을 서면, 음성 또는 기타의 방법으로 안내하고, 계약자는 납입일시중지기간 종료 후 도래하는 월계약해당일까지 보험료를 납입하여야 한다.

15. 보험료의 납입최고(독촉)와 계약의 해지에 관한 사항

가. 계약자가 제2회 이후의 기본보험료를 납입기일까지 납입하지 않아 보험료 납입이 연체 중인 경우에 회사는 14일(보험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에는 7일) 이상의 기간을 납입최고(독촉)기간(납입최고(독촉)기간의 마지막 날이 영업일이 아닌 때에는 납입최고(독촉)기간은 그 다음 날까지로 한다)으로 정한다.

나. '가'의 경우 약관에서 정한 바에 따라 납입최고(독촉)하고, 납입최고(독촉)기간이 끝나는 날까지 보험료를 납입하지 않을 경우 납입최고(독촉)기간이 끝나는 날의 다음 날에 계약이 해지되며, 이 경우 계약이 해지되는 때에는 즉시 해지환급금에서 보험계약대출의 원금과 이자가 차감된다. 다만, 해지 전에 발생한 보험금 지급사유에 대하여 회사는 보상한다.

다. '나'에 따라 계약이 해지된 경우에는 약관 제36조(해지환급금) 제1항에 따른 해지환급금을 계약자에게 지급한다.

16. 계약자적립금의 계산

이 계약의 계약자적립금은 “보험료 및 책임준비금 산출방법서”(이하 “산출방법서”라 한다)에서 정한 방법에 따라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17. 이미 납입한 보험료의 계산에 관한 사항

가. 이미 납입한 보험료는 계약자가 회사에 납입한 기본보험료(특약보험료 제외) 및 추가보험료의 합계를 말하며, 계약자적립금의 중도인출이 있었을 경우에는 기본보험료(특약보험료제외) 및 추가보험료의 합계에서 중도인출금액의 합계를 차감한 금액을 말한다.

나. '가'에도 불구하고 계약자가 기본보험료를 감액하거나, 계약자적립금을 중도인출한 경우 또는 긴급노후자금을 지급받은 이후에 「실적배당 종신연금 종료제도에서 적용하는 “이미 납입한 보험료”」는 아래에서 정한 방법에 따라 계산된 보험료와 해당 감액 또는 중도인출 이후 납입된 보험료의 합계를 말한다.

▶ 감액 이후의 이미 납입한 보험료

$$= \text{감액 직전 이미 납입한 보험료} \times \frac{\text{감액 후 계약자적립금}}{\text{—————}}$$

감액 전 계약자적립금

▶ 실적배당 종신연금 종료제도에서 적용하는 중도인출 이후의 이미 납입한 보험료

$$= \text{중도인출 직전 이미 납입한 보험료} \times \frac{\text{중도인출 전 계약자적립금} - \text{중도인출금액}}{\text{중도인출 전 계약자적립금}}$$

▶ 실적배당 종신연금 종료제도에서 적용하는 긴급노후자금 지급 이후의 이미 납입한 보험료

$$= \text{긴급노후자금 지급 직전 이미 납입한 보험료} \times \frac{\text{긴급노후자금 지급 전 계약자적립금} - \text{긴급노후자금}}{\text{긴급노후자금 지급 전 계약자적립금}}$$

다. ‘나’에서 정한 방법에 따라 이미 납입한 보험료를 계산하는 경우의 「감액(중도인출 또는 긴급노후자금 지급) 직전 이미 납입한 보험료」는 해당 감액(중도인출 또는 긴급노후자금 지급) 전에 감액,중도인출 또는 긴급노후자금 지급이 발생한 경우 ‘나’에 따라 계산된 이미 납입한 보험료를 말한다.

18. 기준 기본보험료 및 기준 추가보험료에 관한 사항

가. 최저연금기준금액 및 긴급노후자금에서 적용하는 “기준 기본보험료”는 계약자가 회사에 납입한 기본보험료(특약보험료 제외)의 합계를 말하고, 최저연금기준금액에서 적용하는 “기준 추가보험료”는 계약자가 회사에 납입한 추가보험료의 합계를 말한다.

나. 선납보험료는 「해당 월계약해당일」에 기준 기본보험료로 포함된다.

다. ‘가’에도 불구하고 계약자가 기본보험료를 감액하거나, 계약자적립금을 중도인출한 경우 기준 기본보험료 및 기준 추가보험료는 아래에서 정한 방법에 따라 계산된 보험료와 해당 감액 또는 중도인출 이후 납입된 기본보험료의 합계 및 추가보험료의 합계를 말한다.

▶ 감액 이후의 기준 기본보험료

$$= \text{감액 직전 기준 기본보험료} \times \frac{\text{감액 후 기본보험료 계약자적립금}}{\text{감액 전 기본보험료 계약자적립금}}$$

▶ 중도인출 이후의 기준 기본보험료

$$= \text{중도인출 직전 기준 기본보험료} \times \frac{\text{중도인출 후 기본보험료 계약자적립금}}{\text{중도인출 전 기본보험료 계약자적립금}}$$

▶ **감액 이후의 기준 추가보험료**

$$= \text{감액 직전 기준 추가보험료} \times \frac{\text{감액 후 기본보험료 계약자적립금}}{\text{감액 전 기본보험료 계약자적립금}}$$

▶ **중도인출 이후의 기준 추가보험료**

$$= \text{중도인출 직전 기준 추가보험료} \times \frac{\text{중도인출 후 추가보험료 계약자적립금}}{\text{중도인출 전 추가보험료 계약자적립금}}$$

라. '다'에서 정한 방법에 따라 기준 기본보험료 및 기준 추가보험료를 계산하는 경우의 「감액(또는 중도인출) 직전 기준 기본보험료」 및 「감액(또는 중도인출) 직전 기준 추가보험료」는 해당 감액(또는 중도인출) 전 감액 또는 중도인출이 발생한 경우 '다'에 따라 계산된 기준 기본보험료 및 기준 추가보험료를 말한다.

19. 최저사망적립금에 관한 사항

최저사망적립금이라 함은 특별계정의 운용실적과 관계 없이 피보험자가 사망하는 경우 보장하는 최저한도의 계약자적립금으로서 사망시점의 최저연금기준금액을 말한다. 다만, 연금개시 후 보험기간에는 사망시점의 연금기준금액에서 연금개시 후 보험기간 중 발생한 실적배당 종신연금 연지급액의 합계를 차감한 금액을 말하며, 이 금액이 '0'보다 적은 경우 '0'으로 한다.

20. 최저연금기준금액에 관한 사항

가. 최저연금기준금액이라 함은 계약일 이후부터 연금개시나이 계약해당일(단, 연금개시 전 보험기간 중 피보험자가 사망한 경우 피보험자가 사망한 날)까지 아래와 같이 계산한 금액을 말한다.

- (1) 기준 기본보험료 및 기준 추가보험료에 기준 기본보험료 및 기준 추가보험료의 매년 4/100 해당액을 해당보험료 납입일(해당 월계약해당일 이전에 납입한 기본보험료의 경우는 월계약해당일)을 기준으로 일자 계산하여 더한 금액을 최저연금기준금액으로 한다.
- (2) (1)에도 불구하고, 긴급노후자금을 지급한 경우에는 긴급노후자금 지급일부터 1년간 기준 기본보험료를 일자 계산하여 적립하지 않는다.

나. '가'에도 불구하고 연금개시 전 보험기간 중 계약자가 기본보험료를 감액하거나 계약자적립금을 중도인출한 경우의 최저연금기준금액은, 아래에서 정한 방법에 따라 재계산된 최저연금기준금액에 해당 감액 또는 중도인출 이후 납입한 기준 기본보험료 및 기준 추가보험료에 기준 기본보험료 및 기준 추가보험료의 매년 4/100 해당액을 해당보험료 납입일(해당 월계약해당일 이전에 납입한 기본보험료의 경우는 월계약해당일)을 기준으로 일자 계산하여 더한 금액을 말한다.

▶ **감액 이후의 기본보험료 납입에 따른 최저연금기준금액**

$$= \text{감액 직전 기본보험료 납입에 따른 최저연금기준금액} \times \frac{\text{감액 후 기본보험료 계약자적립금}}{\text{감액 전 기본보험료 계약자적립금}}$$

▶ **중도인출 이후의 기본보험료 납입에 따른 최저연금기준금액**

$$= \text{중도인출 직전 기본보험료 납입에 따른 최저연금기준금액} \times \frac{\text{중도인출 후 기본보험료 계약자적립금}}{\text{중도인출 전 기본보험료 계약자적립금}}$$

▶ **감액 이후의 추가보험료 납입에 따른 최저연금기준금액**

$$= \text{감액 직전 추가보험료 납입에 따른 최저연금기준금액} \times \frac{\text{감액 후 기본보험료 계약자적립금}}{\text{감액 전 기본보험료 계약자적립금}}$$

▶ **중도인출 이후의 추가보험료 납입에 따른 최저연금기준금액**

$$= \text{중도인출 직전 추가보험료 납입에 따른 최저연금기준금액} \times \frac{\text{중도인출 후 추가보험료 계약자적립금}}{\text{중도인출 전 추가보험료 계약자적립금}}$$

다. ‘나’에서 정한 방법에 따라 최저연금기준금액을 계산하는 경우의 「감액(또는 중도인출) 직전 기본보험료 납입에 따른 최저연금기준금액」 및 「감액(또는 중도인출) 직전 추가보험료 납입에 따른 최저연금기준금액」는 해당 감액(또는 중도인출) 전 감액 또는 중도인출이 발생한 경우 ‘나’에 따라 계산된 최저연금기준금액을 말한다.

21. 연금기준금액에 관한 사항

가. 연금기준금액이라 함은 연금개시 후 보험기간에 최저사망적립금 및 실적배당 종신연금 지급의 기준이 되는 금액으로서 연금개시나이 계약해당일의 최저연금기준금액과 계약자적립금 중 큰 금액을 말한다.

나. ‘(가)’에도 불구하고, 계약자가 연금개시 후 보험기간 중 계약자적립금을 중도인출한 경우의 연

금기준금액은 아래에서 정한 방법에 따라 계산된 금액을 말한다.

$$= \text{중도인출 직전 연금기준금액} \times \frac{\text{중도인출 전 계약자적립금} - \text{중도인출금액}}{\text{중도인출 전 계약자적립금}}$$

다. ‘나’에서 정한 방법에 따라 연금기준금액을 계산하는 경우의 「중도인출 직전 연금기준금액」은 해당 중도인출 전 중도인출이 발생한 경우 ‘나’에 따라 계산된 연금기준금액을 말한다.

22. 실적배당 종신연금에 관한 사항

가. 용어의 정의

(1) 기본 지급률

연금개시나이	피보험자가 남자인 경우	피보험자가 여자인 경우
55~59세	3.7%	3.5%
60~69세	4.4%	4.2%
70~79세	4.9%	4.7%
80세	5.4%	5.4%

(2) 장기유지 가산율

연금개시 전 보험기간 (연금개시나이 - 가입나이)	가산율
10~19년	0%
20~29년	10%
30~39년	20%
40년 이상	30%

(3) 실적배당 종신연금 지급률 = 기본 지급률 × (1 + 장기유지 가산율)

나. 실적배당 종신연금 연지급액이라 함은 연금기준금액(다만, 연계약해당일의 계약자적립금이 더 클 경우에는 계약자적립금)에 실적배당 종신연금 지급률을 곱한 금액을 말한다.

다. 실적배당 종신연금 보증이라 함은 연금개시 후 보험기간 중 피보험자가 매년 계약해당일에 살아있을 경우 특별계정의 운용실적과는 관계 없이 연금기준금액에 실적배당 종신연금 지급률을 곱한 금액에 대해 지급을 보증하는 것을 말한다.

23. 긴급노후자금에 관한 사항

가. 용어의 정의

(1) 긴급노후자금

기준 기본보험료의 4%에 해당하는 금액

(2) 긴급노후자금기간

(연금개시나이 - 5)세 계약해당일부터 (연금개시나이 - 1)세 계약해당일

(3) 긴급노후자금 지급일

긴급노후자금기간 중 「신청일 + 2영업일」이후 최초로 도래하는 연단위 계약해당일

나. 계약자는 다음 조건을 모두 만족하는 유효한 계약에 한해 긴급노후자금을 신청할 수 있다.

(1) 계약일부터 10년 이상이 지난 경우

(2) 납입기간(다만, 납입일시중지에 따라 납입기간이 연장된 경우 연장된 납입기간 포함)이 지난 경우

(3) 긴급노후자금 신청일부터 연금개시나이 계약해당일까지의 기간이 1년을 초과하는 경우

다. 회사는 긴급노후자금 지급일에 기본보험료 계약자적립금에서 긴급노후자금을 지급한다. 다만, 긴급노후자금 지급일의 기본보험료 계약자적립금이 기본보험료 납입에 따른 최저연금기준금액의 70% 미만인 경우 긴급노후자금이 지급되지 않는다.

라. 계약자는 긴급노후자금 지급일 전에는 언제든지 신청을 취소할 수 있다.

24. 특별계정의 운용에 관한 사항

가. 특별계정의 운용 및 평가

(1) 투자목적 및 대상에 따라 구분된 변액보험의 특별계정 자산(이하 “펀드”라 한다)은 일반보험의 자산과 분리하여 독립적으로 운용하여야 하며 자산운용실적이 계약자적립금에 즉시 반영될 수 있도록 매일 평가한다.

(2) 회사는 이 계약의 운용자산을 회사가 운영하는 다른 변액보험의 유사한 성격의 운용자산 별로 통합하여 운용할 수 있다. 이 경우 회사는 펀드 통합사유, 통합일자, 기타 펀드통합 관련사항을 일간신문(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제9호에 따라 전국을 보급지역으로 등록한 일간신문으로서 동법 제2조 제1호의 가 또는 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하며, 이하 같다)에 공고하거나 계약자에게 개별 통지한다. 또한 회사는 펀드를 통합한 날 이후 6개월이 되는 날까지 각 펀드의 결산서류를 회사 본점에 비치한다.

(3) 특별계정 운용보수, 최저사망적립금 보증비용 및 실적배당 종신연금 보증비용은 특별계정과 분리하여 관리한다. 다만, 특별계정 운용보수를 인하할 경우 그 시점에 유지되고 있는 계약에 대하여도 변경일부터 변경된 특별계정 운용보수를 적용한다.

(4) “특별계정 운용보수”라 함은 “운영보수”, “투자일임보수”, “수탁보수” 및 “사무관리보수”를 합한 보수를 말한다.

(가) “운영보수”라 함은 특별계정에 속한 재산의 운용 및 관리 등을 위해 회사가 수취하는 보수를 말한다.

(나) “투자일임보수”라 함은 특별계정에 속한 재산의 투자일임을 위해 자산운용사 등 투자일임업자에게 지급하는 보수를 말한다.

- (다) “수탁보수”라 함은 특별계정에 속한 재산의 보관 및 관리, 자산의 운용 지시의 이행, 운용업무의 위규여부 등을 감시하기 위하여 신탁업자에게 지급하는 보수를 말한다.
- (라) “사무관리보수”라 함은 특별계정에 속한 재산의 회계업무 및 기준가격 산정업무 등을 수행하기 위해 일반사무관리회사에게 지급하는 보수를 말한다.
- (5) 특별계정이 다른 집합투자기구(펀드)에 투자하는 경우에는 그 사실과 특별계정 운용보수 이외에 해당 집합투자기구(펀드)에 투자함으로써 별도의 수수료(판매보수 포함)가 추가적으로 부과된다는 사실 및 그 추가수수료에 대해 안내자료 등에 기재한다.

나. 펀드의 유형에 관한 사항

(1) 펀드의 유형

(가) 채권형

채권 및 이와 관련된 집합투자증권(ETF포함)이나 파생상품 등에 순자산(NAV)의 90% 내외에서 투자함을 원칙으로 하며, 나머지는 유동성자산 등에 투자. 다만, 펀드 분류상 채권 등에서의 최저 편입비가 60% 이상인 채권형 펀드.

(나) 아시아태평양주식혼합형

국내외 주식 및 이와 관련된 집합투자증권(ETF포함)이나 파생상품 등에 순자산(NAV)의 60% 이내에서 투자하고, 채권 및 이와 관련된 집합투자증권(ETF포함)이나 파생상품 등에 순자산(NAV)의 40% 내외에서 투자함을 원칙으로 하며, 나머지는 유동성자산 등에 투자. 다만, 주식 등에 투자함에 있어 한국, 대만, 중국, 인도, 일본 등을 포함한 아시아태평양지역 관련 주식 및 이를 기초자산으로 하는 파생상품 등을 주요 투자대상으로 하는 집합투자증권 위주로 투자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

(다) 아시아태평양주식혼합형 II

국내외 주식 및 이와 관련된 집합투자증권(ETF포함)이나 파생상품 등에 순자산(NAV)의 70% 이내에서 투자하고, 채권 및 이와 관련된 집합투자증권(ETF포함)이나 파생상품 등에 순자산(NAV)의 30% 내외에서 투자함을 원칙으로 하며, 나머지는 유동성자산 등에 투자. 다만, 주식 등에 투자함에 있어 호주, 중국, 인도, 대만 등을 포함한 아시아태평양지역(일본제외) 관련 주식 및 이를 기초자산으로 하는 파생상품 등을 주요 투자대상으로 하는 집합투자증권 위주로 투자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

(라) 인덱스혼합형 II

주식 및 이와 관련된 집합투자증권(ETF포함)이나 파생상품 등에 순자산(NAV)의 70% 이내에서 투자하고, 채권 및 이와 관련된 집합투자증권(ETF포함)이나 파생상품 등에 순자산(NAV)의 30% 내외에서 투자함을 원칙으로 하며, 나머지는 유동성자산 등에 투자. 다만, 주식 등에 투자함에 있어 KOSPI200 지수를 목표 지수로 하여 이를 추종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

(마) 글로벌채권형

글로벌 채권(하이일드채권포함) 및 이를 기초자산으로 하는 파생상품 등을 주요 투자대상으로 하는 집합투자증권(ETF포함) 등에 순자산(NAV)의 70% 이내에서 투자함을 원칙으로 함. 안정적인 수익 추구를 위해 국내 채권 및 이와 관련된 집합투자증권(ETF포함)이나 파생상품 등에 30% 내외에서 투자하며, 나머지는 유동성자산 등에 투자. 시장에 대한 전략적 판단에 따라 투자대상 자산 및 자산별 편입비율을 적극적으로 조절할 수 있는 펀드.

(바) 글로벌자산배분안정형

국내외 주식, 채권, 기타 대안자산(원자재 및 부동산 관련 증권 등) 및 이를 기초자산으로 하는 파생상품 등을 주요 투자대상으로 하는 집합투자증권(ETF포함) 등에 순자산(NAV)의 70% 이내에서 투자함을 원칙으로 함. 안정적인 수익 추구를 위해 국내 채권 및 이와 관련된 집합투자증권(ETF포함)이나 파생상품 등에 30% 내외에서 투자하며, 나머지는 유동성자산 등에 투자. 시장에 대한 전략적 판단에 따라 투자대상 자산 및 자산별 편입비중을 안정적으로 조절.

(사) 글로벌자산배분적극형

국내외 주식, 채권, 기타 대안자산(원자재 및 부동산 관련 증권 등) 및 이를 기초자산으로 하는 파생상품 등을 주요 투자대상으로 하는 집합투자증권(ETF포함) 등에 순자산(NAV)의 90% 내외에서 투자함을 원칙으로 하며, 나머지는 유동성자산 등에 투자. 시장에 대한 전략적 판단에 따라 투자대상 자산 및 자산별 편입비중을 적극적으로 조절.

(아) 신흥국주식혼합형

전세계 신흥국 주식 및 이를 기초자산으로 하는 파생상품 등을 주요 투자대상으로 하는 집합투자증권(ETF포함) 등에 순자산(NAV)의 60% 이내에서 투자함을 원칙으로 함. 안정적인 수익 추구를 위해 국내 채권 및 이와 관련된 집합투자증권(ETF포함)이나 파생상품 등에 40% 내외에서 투자하며, 나머지는 유동성자산 등에 투자.

(자) 혼합성장형

주식 및 이와 관련된 집합투자증권(ETF포함)이나 파생상품 등에 순자산(NAV)의 70% 이내에서 투자하고, 채권 및 이와 관련된 집합투자증권(ETF포함)이나 파생상품 등에 순자산(NAV)의 30% 내외에서 투자함을 원칙으로 하며, 나머지는 유동성자산 등에 투자.

(차) 가치주혼합성장형

주식 및 이와 관련된 집합투자증권(ETF포함)이나 파생상품 등에 순자산(NAV)의 70% 이내에서 투자하고, 채권 및 이와 관련된 집합투자증권(ETF포함)이나 파생상품 등에 순자산(NAV)의 30% 내외에서 투자함을 원칙으로 하며, 나머지는 유동성 자산 등에 투자. 다만, 주식 등에 투자함에 있어 저평가 가치주 등을 중심으로 투자.

(카) 코리아주식형

주식 및 이와 관련된 집합투자증권(ETF포함)이나 파생상품 등에 순자산(NAV)의 90% 내외에서 투자함을 원칙으로 하며, 나머지는 유동성자산 등에 투자. 다만, 펀드 분류상 주식 등에의 최저 편입비가 60% 이상인 주식형 펀드.

(타) 선진국주식형

국내외 주식 및 이와 관련된 집합투자증권(ETF포함)이나 파생상품 등에 순자산(NAV)의 90% 내외에서 투자하고, 나머지는 유동성자산 등에 투자. 다만, 주식 등에 투자함에 있어 미국, 일본, 유럽 등을 포함한 선진국지역 관련 주식 및 이를 기초자산으로 하는 파생상품 등을 주요 투자대상으로 하는 집합투자증권 위주로 투자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

(파) K-REITs혼합형

국내 주식 및 이와 관련된 집합투자증권(ETF포함)이나 파생상품 등에 순자산(NAV)의 60% 내외에서 투자하고, 채권 및 이와 관련된 집합투자증권(ETF포함) 등에 순

자산(NAV)의 40% 내외로 투자하며, 나머지는 유동성 자산 등에 투자. 다만, 국내 주식 등에 투자함에 있어 K-REITs에 대한 투자는 순자산(NAV)의 40% 이내로 투자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

- (2) ‘(1)’에서 운용재산인 유가증권 등의 가격변동 및 해지 등의 사유로 인하여 불가피하게 ‘(1)’의 규정에 의한 투자한도를 초과하게 된 경우에는 3개월 이내에 그 투자한도를 적합하도록 하여야 한다.
- (3) ‘(1)’의 각 펀드의 투자대상 중 관련 법령이 제·개정될 경우 대체 또는 변동될 수 있다.

다. 계약자의 펀드 선택 및 변경

- (1) 계약자는 회사가 정한 바에 따라 ‘나’에서 규정한 펀드 중 1개 이상 선택할 수 있으며, 복수로 선택한 경우 기본보험료의 펀드별 편입비율을 설정해야 하고, 펀드별 편입비율은 5%단위로 설정하여야 한다. 다만, 채권형 펀드의 편입비율은 70%(이하 ‘채권형 최소편입비율’이라 한다) 이상이어야 한다.
- (2) 이 계약에 새로운 펀드를 추가로 설정할 경우 신규 펀드가 추가되기 전의 계약자에게도 동일하게 펀드 선택의 기회를 부여할 수 있다.
- (3) 특별계정 투입보험료에 해당하는 이체금액은 ‘(1)’에서 설정한 펀드별 편입비율에 따라 분산 투입된다.
- (4) 계약자는 추가보험료를 납입하는 경우 ‘(1)’에서 정하는 방법에 따라 펀드별 편입비율을 별도로 설정할 수 있으며, 별도의 설정이 없는 경우는 기본보험료의 펀드별 편입비율을 따른다.
- (5) 계약자는 계약일 이후 1개월 경과 후부터 매년 12회 이내의 범위에서 회사가 정한 방법으로 기본보험료의 펀드별 편입비율 또는 계약자적립금의 펀드별 편입비율의 변경을 요구할 수 있다. 다만, 펀드자동재배분을 선택하지 않은 경우에 한하여 기본보험료의 펀드별 편입비율 변경 없이 계약자적립금의 펀드별 편입비율 변경을 요청할 수 있다.
- (6) ‘(5)’에 따라 계약자적립금의 펀드별 편입비율 변경으로 계약자적립금을 이전할 때에는 채권형 펀드의 계약자적립금 비율은 채권형 최소편입비율 이상으로 해야 한다. 만약, 변경할 때 채권형 펀드의 계약자적립금 비율이 채권형 최소편입비율 미만인 경우 채권형 펀드에서 이외의 펀드로 변경할 수 없다.
- (7) 연금개시나이 계약해당일에 채권형 펀드에 해당하는 계약자적립금 비율이 70%(이하 ‘실적배당 종신연금형의 채권형 최소편입비율’이라 한다) 이상이 되어야 한다. 이를 만족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연금개시나이 계약해당일의 기준가격을 적용하여 채권형 펀드의 계약자적립금 비율이 실적배당 종신연금형의 채권형 최소편입비율 이상이 되도록 계약자적립금의 펀드별 편입비율을 자동조정한다.
- (8) 펀드자동재배분을 선택한 계약자의 펀드 변경 또는 계약자적립금의 펀드별 편입비율 변경 요구는 펀드자동재배분 실행 예정일 직전 제2영업일 이전에 이루어져야 한다.
- (9) 회사는 ‘(5)’에 따른 계약자적립금의 펀드별 편입비율 변경을 요청받은 경우에는 “차. 특별계정의 폐지 (1)”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하며 이 경우 「변경요구일 + 제2영업일」의 기준가격을 적용하여 현금을 이전하는 방식에 따른다.
- (10) 회사는 ‘(5)’에서 정한 요구를 접수한 때에는 계약자에게 변경대상 계약자적립금의 0.1% 이내(5,000원 한도)에서 수수료를 청구할 수 있으며, 이는 ‘(9)’의 현금을 이전할 때 공제한다. 다만, 연 4회에 한하여 펀드변경 수수료를 면제한다.

- (11) 회사는 천재·지변, 유가증권시장의 폐쇄·휴장, 유가증권 등의 매각지연, 기타 이에 준하는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8)에서 정하는 날까지 이전할 수 없게 된 경우에는 즉시 그 사유 및 향후 이전계획 등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여 계약자에게 통지하며, 보험재산이 처분되는 날부터 제2영업일을 기준으로 현금을 이전하는 방식을 따른다.

라. 계약자의 펀드자동재배분 선택

- (1) 계약자는 연금개시 전 보험기간 중 기본보험료의 펀드별 편입비율과 계약자적립금의 펀드별 편입비율이 동일하고, 추가보험료의 펀드를 별도로 설정하지 않은 계약에 한하여 펀드 자동재배분을 선택할 수 있다. 이 경우 채권형 최소편입비율에 따라 특별계정투입보험료가 운용된 계약자적립금을 제외한 계약자적립금은 계약일부터 매 6개월 단위로 기본보험료의 펀드별 편입비율(채권형 최소편입비율 제외)로 자동 재배분 된다.
- (2) 연금개시 전 보험기간 중 펀드변경에 의해 기본보험료의 펀드별 편입비율(채권형 최소편입비율 제외)이 변경된 경우에는 변경된 기본보험료의 펀드별 편입비율(채권형 최소편입비율 제외)에 따라 자동재배분되며, 이 경우에도 계약일부터 매 6개월 단위로 재배분 된다.
- (3) 계약자는 연금개시 전 보험기간 중 펀드자동재배분을 매년 4회 이내의 범위에서 선택 또는 취소할 수 있으며, 연금개시나 계약해당일 이전에 선택한 펀드자동재배분은 연금개시나 계약해당일에 자동적으로 취소된다.
- (4) 펀드자동재배분은 계약일부터 매 6개월 단위로 실행되며, 실행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 다음 영업일에 실행된다.

마. 자산의 평가방법 및 운용에 관한 사항

- (1) 특별계정 자산의 평가 및 운용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등에서 정한 방법에 따른다.
- (2) '1)에서 정한 특별계정 자산의 평가는 각 특별계정별로 적용된다.

바. 특별계정 좌수 및 기준가격에 관한 사항

특별계정의 좌수 및 기준가격은 다음과 같이 산출한다

(1) 좌수

특별계정 설정시 1원을 1좌로 하며 그 이후에는 매일 좌당 기준가격에 따라 좌단위로 특별계정에 이체 또는 인출한다.

(2) 좌당 기준가격

특별계정의 좌당 기준가격은 다음과 같이 산출하되, 1,000좌 단위로 원미만 셋째자리에서 반올림하여 원미만 둘째자리까지 계산하며 최초 판매개시일의 기준가격은 1,000좌당 1,000원으로 한다.

당일 특별계정의 순자산가치

$$* \text{좌당 기준가격} = \frac{\text{특별계정의 총 자산가치}}{\text{특별계정의 총 좌수}}$$

※ 당일 특별계정의 순자산가치라 함은 당일 특별계정의 총자산에서 특별계정 운용보수를 차감한 금액으로 한다.

사. 초기투자자금

- (1) 회사는 특별계정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일반계정에서 특별계정으로 자금을 이체하여 특별계정을 설정할 수 있다.
- (2) ‘(1)’에 정한 초기투자자금의 운용은 특별계정별로 다음 각 호에 의한다.
 - (가) 초기투자자금의 규모는 일반계정 총자산의 1%와 100억원 중 작은 금액을 최고한도로 한다.
 - (나) ‘(1)’의 규정에 의한 특별계정 자산이 분기말 기준으로 초기투자자금의 200%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초기투자자금을 특별계정의 기준가격에 따라 3개월 이내에 일반계정으로 상환한다.
 - (다) ‘(가)’ 및 ‘(나)’의 규정에 의한 초기투자자금의 이체 또는 상환은 현금으로 한다.

아. 특별계정의 제비용 및 보수에 관한 사항

회사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88조에 의한 보수, 그 밖의 수수료와 동법 시행령 제265조에 의한 회계감사비용, 채권평가비용 및 유가증권 매매수수료 등을 특별계정 자산에서 인출하여 부담한다. 다만 자산운용 보고서를 작성·제공하는데 드는 비용은 회사가 부담한다.

자. 계약자 공지에 관한 사항

- (1) 회사는 다음에 해당하는 사항을 그 사유발생 후 회사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거나 계약자에게 공지한다.
 - (가) 투자운용인력의 변경
 - (나)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3조(수시공시의 방법 등) 제2항에서 정하는 부실자산이 발생한 경우 그 명세 및 상각률
 - (다) 회사의 합병, 분할, 분할합병 또는 영업의 양도·수도
 - (라) 기준가격을 잘못 산정하여 이를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 내용
- (2) 회사는 변액보험 판매 후 매 3개월마다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88조에서 규정한 자산운용보고서를 작성하여 계약자에게 제공한다.

차. 특별계정의 폐지

- (1) 회사는 다음 각 호의 경우에 한하여 특별계정을 폐지할 수 있다.
 - (가) 당해 각 특별계정의 자산이 급격히 감소하거나, 자산가치의 변화로 인하여 효율적인 자산운용이 곤란해진 경우
 - (나) 설정한 후 1년이 되는 날에 원본액이 50억원 미만인 경우 또는 1년이 지난 후 1개월간 계속하여 투자신탁의 원본액이 50억원 미만인 경우
 - (다) 당해 각 특별계정의 운용대상이 소멸할 경우
 - (라) ‘(가)’에서 ‘(다)’에 준하는 경우
- (2) 회사는 ‘(1)’에서 정한 사유로 각 특별계정을 폐지할 경우에는 계약자에게 폐지사유, 폐지일까지의 계약자적립금과 함께 약관 제45조(계약자의 펀드 선택 및 변경)의 규정에 따른 펀드 변경 선택에 관한 안내문 등을 작성하여 서면으로 통지한다. 다만, 계약자가 펀드 변경을 별도로 신청하지 않을 경우에는 회사가 유사한 펀드로 이동시킬 수 있다.
- (3) 회사는 ‘(2)’에 따라 계약자가 펀드 변경을 요구한 경우에는 펀드 변경에 따른 수수료를 계

약자에게 청구하지 않으며 연간 펀드의 변경 횟수에 포함시키지 않는다.

카. 특별계정 운용보수(운영보수, 투자일임보수, 수탁보수 및 사무관리보수)에 관한 사항

(1) 펀드종류별 운용보수는 아래 표의 비용으로 한다.

구 분	비 용
채권형	매년 특별계정적립금의 0.26% (매일 특별계정 적립금의 0.00071233%)
인덱스혼합형 II	매년 특별계정적립금의 0.36% (매일 특별계정 적립금의 0.00098630%)
혼합성장형	
가치주혼합성장형	
K-REITs혼합형	
아시아태평양양주식혼합형	매년 특별계정적립금의 0.41% (매일 특별계정 적립금의 0.00112329%)
아시아태평양양주식혼합형 II	
글로벌채권형	
글로벌자산배분안정형	
글로벌자산배분적극형	
선진국주식형	
신흥국주식혼합형	매년 특별계정적립금의 0.46% (매일 특별계정 적립금의 0.00126027%)
코리아주식형	

(2) 펀드종류별 투자일임보수는 실제로 사용된 비용으로 하며 아래 표의 비용을 최고한도로 한다.

구 분	비 용
채권형	매년 특별계정적립금의 0.10% (매일 특별계정 적립금의 0.00027397%)
아시아태평양양주식혼합형	매년 특별계정적립금의 0.15% (매일 특별계정 적립금의 0.00041096%)
아시아태평양양주식혼합형 II	
글로벌채권형	
글로벌자산배분안정형	
신흥국주식혼합형	
선진국주식형	매년 특별계정적립금의 0.20% (매일 특별계정 적립금의 0.00054795%)
인덱스혼합형 II	
혼합성장형	
가치주혼합성장형	
K-REITs혼합형	매년 특별계정적립금의 0.25% (매일 특별계정 적립금의 0.00068493%)
글로벌자산배분적극형	
코리아주식형	

(3) 펀드종류별 수탁보수 및 사무관리보수는 실제로 사용된 비용으로 하며 아래 표의 비용을 최고한도로 한다.

구 분	수탁보수 비용	사무관리보수 비용
채권형	매년 특별계정적립금의0.02% (매일 특별계정 적립금의 0.00005479%)	매년 특별계정적립금의0.02% (매일 특별계정 적립금의 0.00005479%)
아시아태평양주식혼합형		
아시아태평양주식혼합형 II		
인덱스혼합형 II		
글로벌채권형		
글로벌자산배분안정형		
글로벌자산배분적극형		
신흥국주식혼합형		
혼합성장형		
가치주혼합성장형		
코리아주식형		
선진국주식형		
K-REITs혼합형		

25. 특별계정과 일반계정간의 자금이체

가.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각각의 정해진 금액을 회사가 정한 날에 일반계정에서 특별계정으로 이체한다.

(1) 보험료 등의 납입이 있는 경우

다만, 특별계정 투입보험료(납입보험료에서 부가보험료(계약관리비용 중 유지관련비용(보험료 납입기간 후) 제외)를 제외한 금액, 이하 특별계정 투입보험료라 한다)는 “산출방법서”에서 정한 방법에 따라 계산하여 ‘7. 보험료 선납에 관한 사항’ 및 ‘29. 기타’의 가. 납입 보험료의 처리에 관한 사항」에 따라 이체한다.

(2) 보험계약대출의 원금과 이자의 상환이 있는 경우

(3) 기타 회사가 인정하는 경우

나.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각각의 정해진 금액을 회사가 정한 날에 특별계정에서 일반계정으로 이체한다.

(1) 보험금(실적배당 종신연금 포함)의 지급이 있는 경우

(2) 긴급노후자금 지급이 있는 경우

(3) 계약자적립금의 인출이 있는 경우

(4) 실적배당 종신연금 종료제도가 실행된 경우

(5) 보험계약대출금 또는 해지환급금의 지급이 있는 경우

(6) 계약이 소멸 또는 해지된 경우

(7) 월계약해당일에 월공제액을 충당하는 경우 (다만, 월공제액은 “산출방법서”에서 정한 방법에 따른다)

(8) 기타 회사가 인정하는 경우

다. 일반계정과 특별계정간의 이체에 따른 손익처리

- (1) 일반계정과 특별계정간의 이체는 이체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제5영업일 이내에 하며, 이체 금액은 특별계정의 투자수익률을 반영한 금액으로 한다.
- (2) ‘(1)’의 규정에 의한 이체시 이체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실제 이체하는 날까지 실적을 적용함으로 인하여 발생한 손익은 일반계정 주주지분에서 처리한다.

26. 보증준비금에 관한 사항

- 가. 회사는 보험업감독업무시행세칙 [별표24] 보증준비금 산출기준(제4-15조 관련)에서 정한 적립 기준에 따라 최저사망적립금 보증준비금 및 실적배당 종신연금 보증준비금을 적립한다.
- 나. 최저사망적립금 보증은 보험업감독업무시행세칙 [별표24] 보증준비금 산출기준(제4-15조 관련)에 따른 변액연금의 최저사망보험금 보증(GMDB)으로 분류한다.
- 다. 실적배당 종신연금 보증은 보험업감독업무시행세칙 [별표24] 보증준비금 산출기준(제4-15조 관련)에 따른 변액연금의 최저종신중도인출금 보증(GLWB)으로 분류한다.

27. 실적배당 종신연금 종료제도에 관한 사항

- 가. 실적배당 종신연금 종료제도가 함은 유효한 계약에 한하여 연금개시나이 계약해당일의 계약자 적립금이 “이미 납입한 보험료”보다 적을 경우, 계약자의 신청에 따라 연금개시나이 계약해당일의 “이미 납입한 보험료”를 계약자적립금으로 하는 것을 말한다.
- 나. ‘가’항에 따라 실적배당 종신연금 종료제도가 실행된 경우 이 계약의 전부를 ‘29. 기타’의 ‘마’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무배당 연금전환특약으로 전환된다.
- 다. 회사는 연금개시나이 계약해당일이 되기 7일 이전에 계약자 또는 보험수익자에게 ‘실적배당 종신연금 지급액’과 ‘실적배당 종신연금 종료제도가 실행된 경우의 연금액’ 등을 비교해서 안내한다.

28. 장기유지보너스에 관한 사항

- 가. 장기유지보너스란 계약자가 계약일부터 5년이 지난 이후에 기본보험료(추가보험료 제외)를 납입하는 경우, 보험료 납입기간(보험료 납입일시중지로 인해 연장되는 보험료 납입기간은 제외) 동안 월계약해당일에 기본보험료의 1.0%를 추가보험료 계약자적립금(약관 ‘제2조 (용어의 정의)’ 참조)에 투입한다. 다만, 기준 기본보험료 및 기준 추가보험료에는 포함되지 않는다.
- 나. ‘가’에서 계약자가 당월 기본보험료를 월계약해당일 제2영업일 이전에 납입한 경우에는 「월계약해당일」, 월계약해당일 전 영업일 이후에 납입한 경우에는 「납입일+제2영업일」을 기준으로 계약자적립금에 투입한다.
- 다. ‘나’에도 불구하고, 보험료 납입일시중지기간에는 월계약해당일에 기본보험료의 1.0%를 계약자적립금에 투입하며, 보험료 납입일시중지기간 종료 후에는 ‘나’의 규정을 적용한다.

29. 기타

가. 납입보험료의 처리에 관한 사항

(1) 계약자가 납입한 보험료는 이체사유가 발생한 날의 기준가격을 적용하여 이 계약의 특별 계정 투입보험료에 해당하는 이체금액을 일반계정에서 특별계정으로 이체한다.

(2). ‘(1)’에서 「이체사유가 발생한 날」 및 「이체금액」이라 함은 다음과 같다.

(가) 제1회 보험료의 경우 다음과 같다.

이체사유가 발생한 날은 「청약을 한 날부터 30일이 지난 다음날」이며, 이체금액은 특별계정 투입보험료를 제1회 보험료 납입일부터 청약을 한 날부터 30일이 지난 다음 날까지 평균공시이율로 적립한 금액으로 하며, 그 이후의 기간에 대해서는 특별계정의 투자수익률을 적용한 금액으로 한다.

(나) 제2회 이후의 기본보험료의 경우 보험료 납입시점에 따라 다음과 같다.

- 월계약해당일의 제2영업일 이전에 납입한 경우

이체사유가 발생한 날은 「월계약해당일」이며, 이체금액은 기본보험료를 납입일부터 월계약해당일까지 평균공시이율로 적립한 금액에서 부가보험료를 차감한 금액으로 한다.

- 월계약해당일의 전영업일에 납입한 경우

이체사유가 발생한 날은 「납입일+제2영업일」이며, 이체금액은 기본보험료를 납입일부터 월계약해당일까지 평균공시이율로 적립한 후 부가보험료를 차감하고 「월계약해당일+제1영업일」까지 평균공시이율로 적립한 금액으로 한다.

- 월계약해당일 이후에 납입한 경우

이체사유가 발생한 날은 「납입일+제2영업일」이며, 이체금액은 기본보험료에서 부가보험료를 차감한 금액을 납입일부터 「납입일+제2영업일」까지 평균공시이율로 적립한 금액으로 한다.

(다) ‘(나)’에도 불구하고 추가보험료의 경우 이체사유가 발생한 날은 「납입일+제2영업일」이며, 이체금액은 추가보험료에서 부가보험료를 차감한 금액을 납입일부터 「납입일+제2영업일」까지 평균공시이율로 적립한 금액으로 한다.

나. 이 계약의 보험가입금액은 다음과 같이 정한다.

: 기본보험료 × 12 × Min{보험료 납입기간, 10}

다. 보험계약의 변동사항 통지

회사는 다음 각 호의 보험계약 변동사항을 계약일부터 분기별로 계약자에게 서면으로 제공한다. 다만, 계약자가 계약을 체결할 때 혹은 보험기간 중 전자우편을 통하여 수령한다는 의사표시를 서면, 전화(음성녹음) 또는 인터넷 등으로 동의한 경우에는 전자우편을 통하여 제공할 수 있다.

(1) 보험금액 변동에 관한 사항

(2) 납입보험료 누계 및 해지시 해지환급금 등

라. 이 계약의 사업방법서 및 약관에서 정하지 않은 자산운용 관련 용어 및 사항은 관련 법규 등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다만, 자산운용 관련용어 및 사항은 관련법규 등이 제정 또는 개정 될 경우 변동될 수 있다.

마. '27. 실적배당 종신연금 종료제도에 관한 사항'에 따라 무배당 연금전환특약으로 전환하는 경우는 다음과 같이 한다.

(1) 무배당 연금전환특약의 보험료는 전환일 현재 피보험자의 나이에 의하여 계산한다.

(2) 무배당 연금전환특약은 전환당시의 약관 및 보험요율을 적용한다.

바. 회사는 상품명칭 앞에 계약자가 원하는 이름이나 판매경로(금융기관 보험대리점 제외) 등을 인식할 수 있는 용어를 덧붙여 안내자료 및 보험증권에 기재할 수 있다.

사. 추가보험료 납입제도 비교 설명

회사는 보험계약 체결시 계약자에게 저축성보험의 추가납입제도와 추가납입의 사업비 등을 비교하여 설명하여야 한다.

아. 추가보험료 자동이체 서비스에 관한 사항: 회사는 계약자가 원하는 경우 추가보험료에 대해 자동이체 서비스를 제공한다.

자. 보험기간, 보험료 납입주기, 보험료 납입기간 외 가입나이, 가입한도 등 계약인수관련 사항은 회사가 별도로 정한 기준에 따라 제한될 수 있다.

차. 회사는 계약자가 해지할 경우 최저연금기준금액 및 연금기준금액이 아닌 해지환급금을 지급한다는 사실을 계약을 체결할 때 계약자에게 설명하고, 상품설명서를 통하여 계약자가 이를 이해하였음을 확인한다.